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56호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090호)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8일
산업통상부장관

2026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 공고

1. 선정대상

□ 세계일류상품

○ 대한민국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로서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이하 "요령") 제7조에 의한 현재 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 (제조업, 서비스업 공통) >

구 분	선 정 기 준
현재 세계일류상품	(해당 상품 생산액의 국가점유율 기준)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에 들고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 2.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 단, 서비스업 품목은 점유율과 상관없이 수출규모 기준(5백만불 이상)만 충족해도 가능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장성 및 성장성을 평가하여, 향후 7년 이내 현재 세계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인정받은 품목 1.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동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3.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단, 대내외 환경 변화로 수출 실적이 급증하는 상품은 심의를 통해 그 특수성***을 인정 받을시 선정 가능

*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품목의 국가수출액 산출이 어려울 경우 기업의 해당 품목 수출액으로 대체 가능. 2023-2025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5.9%임(출처: 산업통상부 「수출입실적」)

** 미래성장동력산업, 7대 유망서비스산업(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물류) 등

*** 불가항력적 상황(예시 : 코로나 19 사태 등)으로 수출이 폭증하는 상품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 현재 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요령 제9조에 의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준(제조업, 서비스업 공통) >

구 분	선 정 기 준
현재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2.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1위인 기업 3.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수출액의 30% 이상 차지하는 기업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쟁력 및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 1.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실적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3위 이내인 기업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 또는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장관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4. 최근 2년 이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5. 최근 4년 이내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6. 최근 5년 이내 월드클래스300으로 지정된 기업 단,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수요 확대로 수출 실적이 급증하는 상품의 생산기업은 심의를 통해 그 특수성*을 인정 받을시 선정 가능

* 불가항력적 상황(예시 : 코로나 19 사태 등)에 따른 수요확대 등으로 수출이 폭증하는 상품의 생산기업 * 단순 수출 증가는 해당사항 없음

2. 선정절차 및 일정

선정계획 공고, 신청서 접수 (공고 : 산업통상부 / 접수 : KOTRA홈페이지)	'26.5.18.~6.30.
↓	
업종별 추천위원회 심의 (업종별 간사기관)	'26.7.1.~8.29.
↓	
세계일류상품 발전 심의위원회 심의	'26.10월 중
↓	
선정결과 확정·공고 (산업통상부)	'26.11월 중

3.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기간 : 2026. 5. 18.(월) ~ 6. 30.(월) 18:00

□ 신청방법

○ KOTRA 홈페이지를 통해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신청접수 및 서류 제출

* (신청경로) KOTRA 홈페이지 - 사업신청 - 2026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신규선정 모집공고

** 회원가입 필요, 첨부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 및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준을 동시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이미 세계일류상품으로 등록된 제품 또는 서비스업 상품에 대해서는 생산기업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기업에 한해 생산기업 추가 가능

○ 주요 제출서류(온라인 등록,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① 현재/차세대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신청서 [양식1/2]
* 현재/차세대 중복 신청 불가(해당 양식을 확인하여 작성·제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붙임2 참조>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양식3]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제출용 정보제공동의서 [양식4]

□ 문의처

○ 제도관련 : 산업통상부 중견기업지원과(Tel. 044-203-4372)

○ 신청관련 : KOTRA 중견기업팀(Tel. 02-3460-7231)
업종별 간사기관 (붙임1 참조)

<붙임 1>

2026 업종별 간사기관 (38개사)

연번	간사기관	업종 구분
1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섬유·생활용품(4)
2	한국신발산업협회	
3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4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5	한국바이오협회	생물·화학(1)
6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디지털전자(1)
7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반도체·전기전자 부품(7)
8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9	한국전기산업진흥회	
10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11	한국PCB&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	
12	한국드론산업협회	
13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14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산업기계·플랜트(3)
15	한국플랜트산업협회	
16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17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수송기계(5)
18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19	한국철도차량산업협회	
20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21	한국전기차산업협회	
22	한국화학산업협회	철강금속·석유화학(3)
23	한국철강협회	
24	한국세라믹연합회	
25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농수산물(2)
26	한국식품산업협회	
27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보건산업(4)
28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29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30	대한화장품협회	
31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비스산업(4)
32	한국산업지능화협회	
33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34	한국서비스진흥협회	
35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기타산업(3)
36	월드클래스기업협회	
37	한국조달연구원	
38	KOTRA(중견기업팀)	해당 간사기관 없는 품목(1)

<붙임 2>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첨부해야 할 자료

1. 현재 세계일류상품 선정 신청시

- ㅇ 신청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국가별로 세계 5위 이내이고, 전체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상임을 증명하는 자료
- ㅇ 신청 상품의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 달러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일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 ㅇ 신청 상품의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 달러 이상일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2.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선정 신청시

- ㅇ 신청 상품의 최근 3개년 수출증가율이 국가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 ㅇ 신청 상품이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 ㅇ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3. 현재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 신청시

- ㅇ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기업별로 세계 5위 이내에 들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 ㅇ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실적이 1위일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 ㅇ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전체 수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4.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 신청시

- ㅇ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실적이 3위 이내에 들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 ㅇ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 또는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 ㅇ 최근 2년 이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 ㅇ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장관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일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 ㅇ 최근 4년 이내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 ㅇ 최근 5년 이내 월드클래스300으로 지정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붙임 3>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1. "품목명"은 해당 기업의 고유 상품명이 아닌 통용되는 일반 품목명이어야 함

2. 신청서상의 HS코드는 HS 10단위 기준으로 표기하여야 함. 다만 6단위 또는 8단위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6단위, 8단위만 표기

3. **각종 제출서류상의 통계일치 필요,** 기준 **단위표기에** 주의(생산액: 백만불, 수출액: 천불)
 ※ 불일치할 경우 선정 적합여부 검토가 어려워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의 선정기준 중 신기술, 신제품 인증상품이란 산업통상부 기술표준원에서 인증한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 상품과 신제품(NEP: New Excellent Product) 인증 상품을 말함

5. 세계일류상품과 생산기업 선정기준을 동시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 선정함.
 ※ 상품 자체만 신청하거나, 상품과 기업 동시에 신청했으나 신청기업이 선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기업이 탈락하고 상품만 선정된 경우, 선정실익이 없어 선정에서 제외함
 ※ **기선정된 상품(세계일류상품 리스트 참조)에 대한 생산기업 추가를 원하는 기업**은 생산기업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선정 가능함

6. **기업의 해당제품 수출실적**의 경우, 한국무역협회 통계(KITA)를 원칙으로 하되 관세청 자료나 주거래은행에서 발급해주는 수출실적 확인서류, 기타 입증 가능한 서류 모두 가능함

 ※ 현재 및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생산액 및 수출액 인정기준

구 분	내 용
생산액	국내 생산총액 및 국내 기업(모기업이 한국 국적)의 해외 생산총액 합산
수출액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①직접수출, ②대행수출, ③간접수출 등을 모두 포함(단, 해외 현지공장 수출은 미포함)함. 수출액 인정은 수출통관액(관세청 집계로 무역협회가 확인) 기준임. 단, 서비스업 품목으로 수출통관액이 집계되지 않는 경우 ⓐ해외 판매 계약액 중 당해연도 입금액, ⓑ국내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에 의한 국내 매출액의 합산으로 산정.

7. **세계시장과 국내업계의 주요 국가별/기업별 생산 및 시장점유율(생산액/생산량/비중)**은 Display Bank(디스플레이뱅크), i-Supply(아이서플라이), Clarksons(클락슨), Gartner(가트너), SERI(삼성경제연구소) 등 시장조사 전문기관의 보고서나 국내 증권사가 배포하는 기업동향, 해당 품목에 대한 국내외 언론 보도자료, 업종별 협회나 간사기관 등을 통한 자료 모두 가능함. 그 외 내부자료 또한 논리적 근거가 합당하다면 참고 가능하므로 가능한 모든 입증자료를 제출토록 함

8. **신청서류는 KOTRA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 접수**
 * (신청 경로)KOTRA 홈페이지 – 사업신청 - 2026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신규선정 모집공고

[양식1] 현재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신청서

현재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신청서

신청 구분		☐ 미선정 상품	☐ 기선정 상품(생산기업 추가)
상품 정보	**구분**	☐ 제조업	☐ 서비스업
	상품명	국문	
		영문	
	HS코드 (10단위)		
	상품소개	사진	설명
기업 정보	**기업명**	국문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주소	국문	
		영문	
	기업소개		

신청 사유

상품

※ 기선정 품목에 생산기업 추가시 작성 불요

연번	주요 내용(전년도 기준)	선택	비고
1	(해당 상품 생산액의 국가점유율 기준)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	☐	필수
2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	☐	각 호중 하나
3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	☐	
4	세계시장점유율과 상관없이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	☐	서비스업

생산기업

연번	주요 내용(전년도 기준)	선택	비고
1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	☐	각 호중 하나
2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액 1위	☐	
3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전체 수출액의 30% 이상 차지	☐	

신청 근거

1. 세계 주요 국가별 해당 상품 생산 및 시장점유율(전년도 기준)

※ 기선정 품목에 생산기업 추가시 작성 불요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위	세계
국가명							
생산액(백만불)							
비중(%)							100
생산량()							
비중(%)							100

* 한국이 5위 이내 없을 경우, 공란에 별도 기입

** 생산량 단위 필수 기재 후 수치 기입

자료출처 : _____

2. 세계 주요 기업별 해당 상품 생산 및 시장점유율(전년도 기준)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위	세계
기업명							
소속국가							
생산액(백만불)							
비중(%)							100
생산량()							
비중(%)							100

* 자사가 5위 이내 없을 경우, 공란에 별도 기입

** 소속국가는 해당 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국가명 기입

*** 생산량 단위 필수 기재 후 수치 기입

자료출처 : _____

3. 국내 주요 기업별 해당 상품 수출실적(전년도 기준)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위	국내
기업명							
수출액(천불)							
비중(%)							100

* 자사가 5위 이내 없을 경우, 공란에 별도 기입

** 수출은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① 직접수출, ② 대행수출, ③ 간접수출 등 모두 포함(단, 해외 현지공장 수출 미포함)

*** 서비스업 상품의 경우 상기 수출액 이외 ① 해외판매계약액 중 당해연도 입금액, ② 국내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에 의한 국내 매출액도 수출실적으로 인정

자료출처 : _____

담당자 정보

성명	직책	전화	이메일

* 개인정보 작성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확인 필요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양식3]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양식4]

[양식2]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신청서

<table>
<tr><th colspan="6">차세대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신청서</th></tr>
<tr><td colspan="2">신청 구분</td><td colspan="4">☐ 미선정 상품 ☐ 기선정 상품(생산기업 추가)</td></tr>
<tr><td rowspan="5">상품 정보</td><td>구분</td><td colspan="4">☐ 제조업 ☐ 서비스업</td></tr>
<tr><td>상품명</td><td>국문</td><td colspan="3"></td></tr>
<tr><td>HS코드
(10단위)</td><td>영문</td><td colspan="3"></td></tr>
<tr><td>상품소개</td><td colspan="2">사진</td><td colspan="2">설명</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6">기업 정보</td><td>기업명</td><td>국문</td><td colspan="3"></td></tr>
<tr><td>사업자등록번호</td><td>영문</td><td colspan="3"></td></tr>
<tr><td>구분</td><td colspan="4">☐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td></tr>
<tr><td>주소</td><td>국문</td><td colspan="3"></td></tr>
<tr><td>기업소개</td><td>영문</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신청 사유</td><td>상품</td><td colspan="4">※ 기선정 품목에 생산기업 추가시 작성 불요</td></tr>
<tr><td colspan="5">
<table>
<tr><th>연번</th><th>주요 내용(전년도 기준)</th><th>선택</th><th>비고</th></tr>
<tr><td>1</td><td>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동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 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td><td>☐</td><td rowspan="4">각 호중 하나</td></tr>
<tr><td>2</td><td>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상품
- 내용 : ()</td><td>☐</td></tr>
<tr><td>3</td><td>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 인증번호/인증 기술·제품명/인증년도 :
()</td><td>☐</td></tr>
<tr><td>4</td><td>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수요 확대로 수출 실적이 급증한 상품</td><td>☐</td></tr>
</table>
</td></tr>
<tr><td>생산 기업</td><td colspan="5">
<table>
<tr><th>연번</th><th>주요 내용(전년도 기준)</th><th>선택</th><th>비고</th></tr>
<tr><td>1</td><td>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 상품 생산업체 중 3위 이내인 기업</td><td>☐</td><td rowspan="5">각 호중 하나</td></tr>
<tr><td>2</td><td>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이나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
- 인증번호/인증 기술·제품명/인증년도 :
()</td><td>☐</td></tr>
<tr><td>3</td><td>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장관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 상명/수상내용/수상년도 :
()</td><td>☐</td></tr>
<tr><td>4</td><td>최근 2년 이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지정기관/지정일 :
()</td><td>☐</td></tr>
<tr><td>5</td><td>최근 4년 이내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지정기관/지정일 :
()</td><td>☐</td></tr>
<tr><td>6</td><td>최근 5년 이내 월드클래스300으로 지정된 기업
- 지정기관/지정일 :
()</td><td>☐</td><td></td></tr>
<tr><td>7</td><td>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수요 확대로 수출 실적이 급증한 상품의 생산기업</td><td>☐</td><td></td></tr>
</table>
</td></tr>
</table>

신청 근거

1. 해당 상품 및 신청기업 관련 주요 지표(최근 3개년)

구 분	Y-2	Y-1	Y(전년도)	연평균 성장률(%)
기업의 해당 상품 매출액(백만원)				
기업 전체 매출액(백만원)				
기업의 해당 상품 수출액(천불)				
기업 전체 수출액(천불)				
국가의 해당 상품 수출액(천불)				
영업이익(백만원)				
영업이익률(%)				
R&D 투자액(백만원)				
R&D 투자비율(%)				

* 한국무역협회 통계사이트(K-stat) 내 품목 수출입 메뉴에서 해당 상품의 HS코드를 입력하여 국가 수출액 확인 가능
** 수출은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① 직접수출, ② 대행수출, ③ 간접수출 등 모두 포함(단, 해외 현지공장 수출 미포함)
*** 서비스업 상품의 경우 상기 수출액 이외 ① 해외판매계약액 중 당해연도 입금액, ② 국내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에 의한 국내 매출액도 수출실적으로 인정
****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 매출액
***** R&D 투자비율 = R&D 투자액 / 매출액
****** 연평균 성장률 = (Y/Y-2)^(1/2)-1

2. 신청기업의 해당 상품 관련 지적재산권 현황(국내외 합계)

구분	국내	해외
출원	건	건
등록	건	건

* 등록 완료된 건은 출원 건수에서 제외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3. 신청기업의 해당 상품 관련 인증 및 수상 현황

연번	인증/수상명	주관기관	국내/해외	민간/정부	유효기간

4. 국내 주요 기업별 해당 상품 수출실적(전년도 기준)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위	국내
기업명							
수출액(천불)							
비중(%)							100

* 자사가 5위 이내 없을 경우, 공란에 별도 기입

** 수출은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① 직접수출, ② 대행수출, ③ 간접수출 등 모두 포함(단, 해외 현지공장 수출 미포함)

*** 서비스업 상품의 경우 상기 수출액 이외 ① 해외판매계약액 중 당해연도 입금액, ② 국내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에 의한 국내 매출액도 수출실적으로 인정

자료출처 : _____

담당자 정보

성명	직책	전화	이메일

* 개인정보 작성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확인 필요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양식3]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양식4]

[양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운영 및 수출지원 사업」을 위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이메일 주소, 사무실 번호, 휴대폰 번호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운영 및 직·간접수출지원 사업 안내, 사후F/U 등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비동의 ☐

○ 개인정보 제3자 재공내역

제공받는 자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사업 추진 수행사,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관련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운영 및 수출지원 사업 추진	1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 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비동의 ☐

20 년 월 일

기업명 :

개인정보제공 동의자 : 성명 1 (인)
성명 2 (인)
성명 3 (인)
성명 4 (인)
성명 5 (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 귀하

[양식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제출용 정보제공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표준서식)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